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2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김민석·박상혁·이상헌

강병원 · 강훈식 · 이용빈

유후덕 · 강득구 · 이광재

장철민 · 최종윤 · 정청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 등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이에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, 은폐 등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그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제2호의 3, 제33조제3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7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제13조제1항,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· 변경허가, 갱신허가 또는 승인 ·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
제33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 제3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 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·변경허 가・갱신허가・승인・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허가 등의 취소 등) ①식	제25조(허가 등의 취소 등) ①
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	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	
취소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바	
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	
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	
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	
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호 및 제7	
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	
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	
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	
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	
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	
1. ~ 2의2. (생 략)	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3. 제13조제1항, 제14조제2
	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
	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
	한 방법으로 허가 · 변경허가,
	갱신허가 또는 승인 · 변경승
	인을 받은 경우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3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	제33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- 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- 3. (생략)
- ④ (생 략)
- 제3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7. (생략)

<신 설>

8. ~ 10. (생략)

③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
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
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
<u> 가・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</u>
를 받은 자
3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제34조(벌칙)
<u>.</u>
1. ~ 7. (현행과 같음)
7의2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
<u>받은 자</u>

8. ~ 10. (현행과 같음)